

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

1. 심사 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6. 12. 제천시장
- 회부일 : 2009. 6. 15.
- 상정일 : 2009. 6. 18.(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)

가. 제안이유

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발생시 일반회계로의 능동적 전출입을 통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광신)

[법적검토]

- 본 조례안은 종전 「주택건설촉진법」에 근거하여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천시 주택 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회계별 예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-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음.
- 사전절차 이행
 - 입법예고 : 2009. 5. 23 ~ 6. 11 (20일간)
 - 조례규칙심의회 : 2009. 6. 12

[행정적검토]

- 본 조례안은 「주택법」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주택사업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, 같은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거 특별회계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편성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 본 조례의 설치목적 또한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.
-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골자는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설치 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의 원활한 정리와 예산 사용의 효율적 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 사업 수행과 기능을 다하였다면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
-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도 현재 특별한 신규사업이 없고 향후 주택사업의 수요가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 폐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하고 면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미 충주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 동일한 조례를 폐지한 바 있음.
- 안 제9조 중 “공동주택관리령 및 동규칙”을 “「주택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”으로 하는 것은 제9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령이라는 법규는 존재하지 않아 현행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임.

4. 질의 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- 향후 주택수요 감소로 특별한 신규사업이 없어, 일반회계로 전출시 운영방안은?(김병룡 위원)
-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발생 규모는?(권건중 위원)
-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된 내용, 일반회계 전출 규정으로 인하여 예상가능한 문제점, 향후 특별회계의 운영계획은?(유영화 위원)

나. 답변요지 <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>

- 본 특별회계는 30년정도 조성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사업과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임.
- 특별회계 규모는 약 105억원정도로 약 20-30억여원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. 따라서 나머지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려고 함.
- 조례규칙심의회시 제10호의 주택자재 생산 및 운영 내용이 상위법 위반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어 삭제되었고, 많은 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됨으로 인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음.
- 본 특별회계는 비둘기아파트와 시영아파트 관리 운영에 사용되고 있으며, 특히 서민들을 위한 회계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음.

5. 소수의견

“ 없 음 ”

6. 토론요지

“ 없 음 ”

7. 심사결과

“ 원안가결 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 끝.